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(배재만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

발의일자 : 2019년 10월 일
발 의 자 : 김영래, 김경호, 김성우 , 도희재, 전수곤, 황숙희

1. 개정이유

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도록 결산검사 항목인 결산개요, 세입·세출의 결산, 재무제표, 성과보고서 등 필요한 사항과 상위법령 위배 및 인용 법령 제정으로 인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결산검사 위원 정수는 “3인으로”를 “3명 이상 5명 이하로”로 개정(안 제2조)

나. 위원 중 1인은 성주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는 단서 삭제(안 제3조)

다.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종전 “세입·세출의 결산, 계속비·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, 채권 및 채무의 결산, 재산 및 기금의 결산, 금고의 결산”에서 “결산개요, 세입·세출의 결산, 재무제표, 성과보고서, 결산서의 첨부서류 , 금고의 결산”으로 개정하여 현실화 함(안 제7조)

라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83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(검사위원의 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)에 결산 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(안제7조 제2항)

마. 별표 중 일비를 “80,000원”에서 “100,000원”로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

나. 기 타 : 조례안예고(2019. . ~ 2019. .)

4. 개정조례안 : 붙임

조례 제 호

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2조(위원의 정수)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, 이 경우 성주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.
제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결산개요
2. 세입·세출의 결산
3. 재무제표
4. 성과보고서
5. 결산서의 첨부서류
6. 금고의 결산

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.
별표 중 일비를 “80,000원”에서 “100,000원”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[별표]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위원의 정수) 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되, 성주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	제2조(위원의 정수)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, 이 경우 성주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.다만, 위원 중 1인은 성주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.	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----------. <단서 삭제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)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. 1. 세입, 세출의 결산 2. 계속비,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.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.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. 금고의 결산 <신 설>	제7조(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) ①----------. 1. 결산개요 2. 세입·세출의 결산 3. 재무제표 4. 성과보고서 5. 결산서의 첨부서류 6. 금고의 결산
②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이 직접 설치・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「지방공기업법」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.	<삭 제>

【별표】

구 분	액 수
일 비	100,000원
여 비	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상 의원에 대한 여비 상당액